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한다) 정관 제4조 ④항에 명시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제도의 운영 목적】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전문상담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활동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갖춘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배출한다.
- ②대학 및 대학원(석·박사과정)의 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유도함으로써 전문상담사의 자질과 역량 향상에 기여한다.
- ③전문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전문수련기관의 발굴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전문적인 상담 인력의 양성에 기여한다.
- ④전문상담사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상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문적 역량을 갖춘 상담자를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한다.
- ⑤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될 수 있는 전문상담사 자격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전문상담사의 사회적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다.

제3조【정의】 전문상담사라 함은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필기)에 합격한 후 면접과 자격연수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자격 등급 및 역할

제4조【자격등급】 전문상담사의 자격등급은 1급 전문상담사와 2급 전문상담사 구분한다.

제5조【역할】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1급 전문상담사: 1급 전문상담사는 전문적 상담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최고 전문가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 및 지도
2.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4. 상담기관의 설립 및 운영과 전문상담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5.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업체 등 조직의 상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자문

②2급 전문상담사: 2급 전문상담사는 전문적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개인 및 집단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개입
3. 상담 및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와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4. 상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접수면접, 사례관리, 상담행정 등) 수행

제6조【자격 조건】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1급 전문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수련자격을 갖추어 심사를 통과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1급 전문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2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상담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원(석·박사 과정)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한 자

②2급 전문상담사는 본 학회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수련자격을 갖추어 심사를 통과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급 전문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1.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대학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2015년 이전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③자격심사는 수련자격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되며 수련자격과 수련요건의 세부내용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④수련생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수련감독자에게 지도·감독 받아야 한다.

⑤“상담학 전공”, “상담관련 영역의 교과목”, “상담수련경력” 등의 인정 기준과 방법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자격검정

제7조【검정시기】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8조【검정기준】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자격검정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1급 전문상담사

- 1.지식: 상담철학,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임상지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기능: 다양한 전문영역에서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및 개입, 상담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그리고 상담 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②2급 전문상담사

- 1.지식: 상담윤리,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진로상담, 가족상담(7개 영역 중 6개 영역 선택)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2.기능: 개인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 그리고 상담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9조【검정방법】

- ①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 ②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친 후,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심사(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③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4장 자격증의 교부 및 관리

제10조【자격의 신청】

- ①본 학회에서 시행하는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자격검정위원회에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 해당 등급의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전문상담사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증의 발급 및 교부】

- ①학회장은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등급의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 후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자격증을 일괄 등록해야 한다.
- ②전문상담사 자격증에는 자격증의 명칭, 등록번호, 발급대상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최초발급일 등을 기재한다.
- ③자격증 교부는 당사자가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회장의 허락을 얻어 대리 수령이나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제12조【자격의 갱신】

- ①전문상담사는 자격 취득 후 매 5년마다 전문상담사 자격을 갱신하여야 한다.
- ②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로서 만 65세 이상으로 3회 이상 자격을 갱신한 자는 이후 5년마다 자격갱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회원회비와 전문가회비는 모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13조【자격의 유지】 전문상담사는 자격취득 후 매 5년 이내에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를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갱신 해당년도에 자격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1급 전문상담사

- 1.전문가 회비 납부
- 2.본학회 주최 연차대회 1회 이상
- 3.본학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 4.본학회 주최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회 1회 이상
- 5.학술/연수활동(소속학회의 세부규정에 따름)

②2급 전문상담사

- 1.전문가 회비 납부
- 2.본학회 주최 연차대회 1회 이상
- 3.본학회 주최 통합사례발표회 5회 이상
- 4.본학회 주최 전문상담사 자격 유지를 위한 연수회 1회 이상
- 5.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사례발표회 2회 이상
- 6.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 15시간 이상

제14조【자격의 정지 및 회복】

- ①전문상담사 자격 취득 후 자격의 유지를 위한 요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윤리규정의 위반에 의해 징계를 받은 경우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이 정지되며, 정지된 기간의 수련 내용은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②자격의 정지를 당한 자가 자격 유지와 갱신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거나 징계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15조【윤리강령 준수의 의무】 전문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본 학회가 정한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자격유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5장 자격검정위원회

제16조【설치】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관리·운영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제17조【기능】 자격검정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자격검정의 방향 설정 및 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 ②검정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 ③자격시험의 출제, 채점, 면접 등 전형의 기준에 관한 사항
- ④자격 급별 검정수수료의 책정에 관한 사항
- ⑤자격시험의 난이도 조정 및 시간 배정에 관한 사항
- ⑥자격심사와 자격시험의 합격자 사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⑦자격규정에 명시된 상담관련 교과목, 상담수련경력 등의 인정에 관한 사항
- ⑧자격검정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이 부의하는 기타 사항

제18조【조직과 구성】

- ①자격검정위원회는 위원장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②자격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격 관련 실무를 담당할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둔다.

제19조【회의】

- ①위원장은 심의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 ③자격검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보칙】

- ①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본 자격규정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 ①본 자격규정은 본 학회가 공표한 날(2000.6.3) 부터 발효한다.
- ②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0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⑥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1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㉞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 제6조 ㉞항 4호는 시행은 2019년까지 적용한다.

㉟본 자격규정의 개정안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9조 3항에 명시한 전문상담사 자격심사 및 자격시험 시행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정방법】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자격심사와 자격시험으로 이루어진다.

①자격심사는 수련자격심사와 수련요건심사로 구분한다.

1.수련자격심사는 자격규정 제6조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요건을 심사한다.

2.수련요건심사는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련요건을 심사한다.

②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한다.

1.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8조, 자격검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평가한다.

2.면접시험은 자격검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기 능과 태도를 평가한다.

③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본 학회가 요구하는 자격심사(수련자격심사, 수련요건심사)와 자격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합격한 후, 자격급별 전문상담사 자격연수를 이수하고,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3조【검정회수 및 공고】

①전문상담사 자격검정은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학회장은 전문상담사 자격검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년 초에 공고한다.

제2장 자격심사

제4조【자격심사】

①수련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규정 제6조,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을 갖추어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련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련자격심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한다.

③수련요건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위 1항의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하고 수련생으로 등록하고 수련과정 시행

세칙 제8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상담수련경력에 해당하는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자격검정위원회에 제출하고 수련요건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격심사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⑤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수련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은 수련과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5조【수련자격심사 접수】

①1급 전문상담사

1. 전문상담사 수련자격심사 온라인 접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석.박사 과정) 각 1부
3. 본 학회 전문상담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②2급 전문상담사

1. 전문상담사 수련자격심사 온라인 접수
2.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대학원) 각 1부
3. 교육연수인증기관 이수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6조【수련요건심사 접수】

①1급 전문상담사

1.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심사 온라인 접수
2. 교육연수인증기관 상담수련 프로그램 수료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련기록부 1부 (해당자에 한함)
4. 본 학회가 요구하는 기타 수련 이수 증명서 각 1부
5. 공개사례발표 및 집단상담사례발표 결과 보고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연구실적 증명서 1부
 - 1) 상담관련 논문(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 2)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게재
 - 3) 저·역서
 - 4)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
 - 5) 연차학술대회 포스터발표

②2급 전문상담사

1.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심사 온라인 접수
2. 교육연수인증기관 상담수련 프로그램 수료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수련기록부 1부(해당자에 한함)
4. 본 학회가 요구하는 기타 수련 이수 증명서 각 1부

5. 개인상담사례보고서 및 집단상담사례보고서 각 1부

제3장 자격시험

제7조【자격시험】

- ①필기시험은 자격규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수련자격심사를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②면접시험은 필기시험과 수련요건심사를 모두 통과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제8조【필기시험 출제영역】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 필기시험의 출제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1급 전문상담사: 상담철학,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임상지도 6개 영역
- ②2급 전문상담사: 상담윤리, 상담 이론과 실제, 집단상담, 평가와 진단, 상담연구, 진로상담, 가족상담 7개 영역 중 6개 영역을 선택(6개 과목 실시)

제9조【출제형식】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 필기시험은 5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하며,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필기시험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1급 전문상담사: 영역별 25문항씩 150문항
- ②2급 전문상담사: 영역별 25문항씩 150문항

제10조【출제위원】

- ①시험과목의 출제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 ②출제위원 등의 선정·위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1조【출제 및 시험관리】

- ①시험 출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필기시험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치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시험 출제와 관리, 고사의 시행 및 관리, 채점 등에 관한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필기시험의 합격 사정】

- ①필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평균 6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의 최저 점수는 40점이며, 6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 점수 미만이 되면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②필기시험의 합격 효력은 합격한 해를 포함하여 만 5년으로 한다.
- ③외국대학 상담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필기시험의 면제 혹은 부분면제를 받을 수 있다.

1.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 전문상담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격

증을 소지한자는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2.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학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을 이수한 자는 필기시험 중 일부를 면제한다.

제13조【필기시험 응시접수】 필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련자격심사에 통과한 자로서 수수료와 함께 심사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면접시험】

- ①수련요건심사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②면접시험 출제 영역 및 문항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1급 전상담사: 연구 설계와 상담수퍼비전 2개 영역에서 각 1문항
 - 2.2급 전문상담사: 자료 분석과 상담사례개념화 2개 영역에서 각 1문항
- ③면접시험은 구술시험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논술형 또는 작업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면접위원은 본 학회 자격검정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학회장이 선정하여 위촉한다.
- ⑤면접시험은 면접시험 채점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 ⑥면접시험의 합격은 70/100점 이상의 평균점수를 얻은 자에 한한다.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효력이 유효한 때까지 면접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다.

제15조【면접시험 응시접수】

- ①1급 전문상담사
 - 1.전문상담사 면접시험 온라인 접수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②2급 전문상담사
 - 1.전문상담사 면접시험 온라인 접수
 - 2.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16조【보칙】

- ①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시험 출제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관리지침에 의거한다.
- ③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 ①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7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 ②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10월 24일부터 행한다.
- ③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1년 2월 26일부터 행한다.
- ④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5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 ⑧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7년 3월 7일부터 행한다.

(사)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전문상담사 자격규정 제9조 2항과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위한 수련과정과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련과정】

①수련과정은 수련생이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수련 내용을 이수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수련과정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충족되어야 한다.

- 1.학술/연수활동,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및 참여는 교육연수위원회에 등록하고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혹은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실시한다.
- 2.공개사례발표회는 수련감독자 2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수련감독자 2인 중 1인은 시행세칙 제4조 ①항 2호에 해당하는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여야 한다.
- 3.수련감독자의 자격이 정지된 기간에 이행한 수련내용은 수련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4.수련생이 회원의 자격을 갖춘 후 이행한 수련 내용만 수련 과정으로 인정한다.

제3조【수련생】

①수련생은 시행세칙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수련자격을 갖추어 자격검정위원회의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한 후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시행세칙 제8조에 해당하는 상담수련과정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모든 수련생은 수련과정 시행세칙 4조에 명시된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 하에 수련 내용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감독자】

①수련감독자는 일반 수련감독자와 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일반 수련감독자는 본 학회로부터 1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 2.전문영역 수련감독자는 일반 수련감독자로서 소정의 승급요건을 충족한 후 분과학회로부터 전문영역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②수련감독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1.일반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또는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자의 수련감독 또는 공개사례발표회 부 슈퍼바이저
- 2.전문영역 수련감독자: 1급 전문상담사 또는 2급 전문상담사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자의 수련감독 또는 공개사례발표회 주 슈퍼바이저

③학회장은 자격검정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상담심리전문가, 정신과전문의 등 인접 분야의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에게 명예수련감독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이 경우, 수련생은 수련 내용의 30% 이내에서 본 항에 해당하는 수련감독자의 수련감독 내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④자격검정위원회는 매년 1차례 이상 수련감독자의 명단을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 ⑤전문영역 수련감독자로 승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승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통요건
 - 1)1급전문상담사 취득 후 5년이 지난 자
 - 2)한국상담학회 주최 연차대회 참여 1회 이상
 - 3)한국상담학회 주최 통합학술대회(모학회 세션) 참여 5회 이상
 - 4)한국상담학회 혹은 승급을 지원하고자 하는 분과학회 주최의 학술/연수활동 참여 45시간 이상(단, 1/3 까지는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2. 해당 분과학회의 승급요건

제5조【수련자격심사지원조건】

- ①1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후 수련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2급 자격증 취득자
 2. 상담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
 3. 대학원(석·박사)에서 상담관련 36학점(박사과정 18학점 이상 포함) 이상 이수한 자
- ②2급 전문상담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후 수련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 450시간 이상 이수한 자
 2. 대학에서 상담관련 36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대학원에서 상담관련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4. 3급 전문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자

제6조【수련기관】

- ①수련기관은 본 학회에서 전문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기관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 ②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수련기관이 전문상담사 수련생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려면 본 학회로부터 교육연수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2.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는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수련 내용 및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격검정위원회의 상담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의 실행 계획과 그 결과를 자격검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교육연수인증기관에서는 자격검정위원회의 수련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수련생을 모집하여, 매년 지정된 기간 내에 수련생의 인적 사항과 수련과정 이행 사항을 자격검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련기간】

①수련기간은 자격규정 제6조와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8조에 정한 바에 따라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상담수련내용을 이행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수련생은 교육연수인증기관에 수련생으로 등록하여 수련과정 시행세칙 제5조, 제8조에 따라 정해진 수련기간 동안 수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수련과정 및 내용은 정해진 수련기간에 관계없이 전문상담사 수련과정의 일부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수련내용 및 기준】 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수련내용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①1급 전문상담사: 아래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상담수련경력 3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과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규정 제6조 ①항 1, 2에 해당하는 자는 ②항에 명시된 2급 전문상담사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과 기타 요건을 추가로 수련하여야 한다.

1.상담수련경력 3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별첨 1]

1)개인상담(매년 120시간씩 총 360시간)

- 내담자 경험 20시간 이상
- 상담자 경험 180시간 이상(10회기 이상 지속한 10사례와 3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한 10사례 포함)
- 개인(소그룹) 슈퍼비전 50시간(심리검사 슈퍼비전 20시간 포함)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40시간

2)집단상담(매년 60시간 총 180시간)

- 집단원 경험 90시간
- (보조)지도자 경험 80시간(지도자 경험 40시간 이상 포함, 30시간 이상 지속된 1집단 포함)
- 개인(소그룹) 슈퍼비전 10시간

2.기타 수련 요건

1)연차학술대회 1회 참여

2)상담관련 각종 학술/연수활동 60시간(매년 20시간 총 6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5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 1회 이상 포함

3)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개인상담 공개사례발표 2사례(각 10회기 이상 지속하고 2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 1집단(30시간 이상 지속하고 2시간 이상 슈퍼비전 받은 사례)

4)연구실적(택 1)

- 상담관련 논문(등재 후보지 이상) 게재 1편
-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게재 1편
- 저·역서 1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 1회
-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포스터발표 1회

②2급 전문상담사: 아래 각 호를 모두 포함하여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과 기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자격규정 제6조 2항 (1)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과 기타 요건을 추가로 수련하여야 한다.

1.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별첨 2]

1) 개인상담(총 120시간)

- 접수면접(보조) 20시간 이상
- 내담자 경험 10시간 이상
- 상담자 경험 60시간 이상(5회기 이상 지속 5사례, 2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5사례 포함)
- 개인(소그룹) 슈퍼비전 20시간(심리검사 슈퍼비전 4시간 포함)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10시간 이상

2) 집단상담(총 60시간)

- 집단원 경험 30시간
- (보조)지도자 경험 25시간
- 개인(소그룹) 슈퍼비전 5시간

2. 기타 수련 요건

1) 연차학술대회 1회 참여

2) 상담관련 학술/연수활동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2회 이상 포함
-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학술/연수활동 1회 이상 포함

3) 상담사례보고서

- 개인상담 사례보고서 1사례(5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로 한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
- 집단상담 사례보고서 1집단(지도자 경험으로 한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

③수련내용의 서류대체: 외국대학 상담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 전문상담사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1급의 자격수준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외국학회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 인턴십을 이수한 자는 수련내용을 해당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상담수련경력의 산정 시 유의사항】

①상담수련경력은 매년 최소 6개월 이상 수련해야 하며, 1년 단위로 인정한다.

②수련시간은 1년 180시간~240시간까지 인정된다(기타 수련요건 제외).

③자격 급별 전문상담사의 자격 취득에 요구되는 상담수련경력의 수련내용 및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④전문상담사 급별 자격심사(수련요건심사)시 아래의 수련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1. 학회 가입 이전에 받은 수련내용

2. 2급 취득 후 1급 자격심사를 받는 경우: 2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심사 신청일 이전에 받은 수련내용

3.3급 취득 후 2급 자격심사를 받는 경우: 3급 전문상담사 수련요건심사 신청일 이전에 받은 수련내용

제10조【보칙】

- ①본 시행세칙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격검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②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본 학회 운영위원회에서 행한다.

부칙

- ①본 시행세칙은 한국상담학회가 공표한 날(2000. 6.3)부터 발효한다.
- ②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7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 ③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8년 1월 1일부터 행한다.
- ④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09년 10월 24일부터 행한다.
- ⑤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1년 2월 26일부터 행한다.
- ⑥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②항 4호는 2019년까지 적용한다.
- ⑦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⑤항 1호의 4)는 2018년까지 점증적 적용한다(2015년 승급자: 9시간 이상, 2016년, 2017년 승급자: 30시간 이상).
- ⑧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6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⑨본 시행세칙의 변경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②항 1호의 교육연수위원회 등록은 201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첨 1] 1급 전문상담사 년차별 세부 수련 기준 및 내용

이수 영역		1년차	2-3년차	항목별 시간	계	비고
개인상담	· 내담자 경험	10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360시간	
	· 상담자 경험 - 10회기 이상 지속 10사례 - 3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10사례 포함	60시간 이상	120시간 이상	180시간 이상		
	· 개인(소그룹)슈퍼비전 - 심리검사 슈퍼비전 20시간 포함	2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10시간 이상	30시간 이상	40시간 이상		
집단상담	· 집단원 경험	30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90시간 이상	180시간	
	· (보조)지도자 경험 - 30시간 이상 지속 1집단 포함 - 지도자경험 40시간 이상포함	30시간 이상	50시간 이상	80시간 이상		
	· 개인(소그룹) 슈퍼비전	3시간 이상	7시간 이상	10시간 이상		

* 자격규정 제6조 1항 (1)과 (2)에 해당하는 자는 2항에 명시된 2급 전문상담사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과 기타 요건을 추가로 수련하여야 한다.

* 회기는 실시 시간에 따라 수련시간으로 계산한다.

[별첨 2] 2급 전문상담사 세부 수련 기준 및 내용

이수 영역		1년차	계	비고
개인상담	· 접수면접(보조)	20시간	120시간	
	· 내담자 경험	10시간		
	· 상담자 경험 - 5회기 이상 지속 5사례, - 2종 이상 심리검사 활용 5사례 포함	60시간		
	· 개인(소그룹)슈퍼비전 - 심리검사 슈퍼비전 4시간 포함	20시간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10시간		
집단상담	· 집단원 경험	30시간	60시간	
	· (보조)지도자 경험	25시간		
	· 개인(소그룹)슈퍼비전	5시간		

* 자격규정 제6조 2항 (1)에 해당하는 자는 2급 전문상담사 상담수련경력 1년에 해당하는 상담 경험과 기타 요건을 추가로 수련하여야 한다.